



 법무부		<b>도 자 료</b>	반듯한 사회, 행복한 국민
보도일시	2017. 7. 3.(월) 조간부터 보도		총 3 쪽
배포일시	2017. 7. 1.(토)	담당부서	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
담당과장	임 진 택 (02) 2110-4075	담 당 자	윤상용 사무관 (02) 2110-4082
사진	없음	대변인실	(02) 2110-3717

: ‘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’ 운영  
 - 시 불법체류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-

■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(2017. 7. 10. ~ 2017. 10. 10.) 한시적으로 “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”을 운영합니다.

- 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,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됩니다. 단, 위·변조 여권 행사자, 밀입국자, 형사범은 제외됩니다.

※ 기존에는 자진출국 시 ▲입국금지 면제(불법체류 1년 미만), ▲입국금지 1년(불법체류 1년 이상~3년 미만), ▲입국금지 2년(불법체류 3년 이상)

**【자진출국 촉진기간 내 입국금지 면제기간 확대】**

기간		1년 미만	1년 이상~3년 미만	3년 이상~5년 미만	5년 이상
입국 금지		면제	1년	2년	
	확대	면제			1년

-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.

## 【시행 배경】

-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

## 【자진출국 및 재입국 절차】

-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 (여행증명서)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·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됩니다.

※ 자진출국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음

- 불법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자진 출국자는 출국 후 비자 소지 등 입국요건을 갖추면 언제든지 다시 입국할 수 있으며, 불법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자진출국자도 출국 1년 후에 요건을 갖추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.

## 【향후 계획】

-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증원하여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.
- ‘수도권·영남권 광역단속팀’에 이어 ‘중부권·호남권 광역단속팀’을 추가·신설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연간 20주간 시행합니다.
-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 입국·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### 【자진출국 및 불법체류자 현황】

- 지난해에도 9개월(4월~12월) 동안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입국 금지면제 제도를 시행하여 4.4만 명이 자진 출국한 바 있습니다.

구 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 5월
불법체류자	20.8만 명	21.4만 명	20.9만 명	22.3만 명
자진출국자	2.5만 명	2.8만 명	5.2만 명	1.4만 명